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7월 18일

**CUOMO 주지사 뉴욕주 소규모 양조업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 서명**

*새로운 법은 뉴욕주의 소규모 양조자들에게 극히 중요한 세금 혜택을 준속시킵니다*

*소규모 양조자들이 주정부에 지불하는 연례 주류 판매 면허 비용을 면제합니다*

*지역내 성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 양조 면허를 창설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Utica에 소재한 Matt Brewing Company를 방문하여 뉴욕주의 활발한 소규모 맥주업계를 강화하고 성장시키게 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령은 뉴욕주의 맥주 양조장 및 포도주 양조장을 지원하고, 지역내에서 재배한 농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업계 관련 경제 개발 및 관광 사업의 확장을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뉴욕주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업계에 극히 중요한 세금 혜택을 보호하고, 소량의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자들(생산지와 무관하게)이 주정부에 지불하는 연례 주 주류국 면허비를 면제해주며, 농장 양조 면허를 창설함으로써 소규모 양조자들이 식당을 개업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뉴욕주의 소규모 양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맥주를 생산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주의 농부 및 홉 열매 재배인을 지원하며,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역 커뮤니티들에 관광 수익을 가져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이 법령은 뉴욕주가 실로 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며, 이 법은 맥주 양조업자 및 포도주 양조업자가 새로운 기회를 위해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법의 통과를 위해 협력해 온 법안의 후원자들 및 주의회 지도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법령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합니다:

## 뉴욕주 양조자들에게 극히 중요한 세금 혜택을 보호합니다

뉴욕주에서 6천만 갤런 이하의 맥주를 생산하는 모든 양조자들은 뉴욕주 개인 소득세 및 영업세에 적용되는 환급 가능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액은 첫 5십만 갤런에 대해 갤런당 14센트이며, 그 다음 1천 5백만 갤런에 대해서는 갤런당 4.5센트입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은 이미 양조장의 수가 90개 이상이며 수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뉴욕주 소규모 양조업체가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종전의 세법은 뉴욕주의 소규모 양조자들에게 소비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세금 공제의 범주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인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오늘 법령으로 서명된 새로운 혜택으로 인해, 모든 소규모 양조자들은 적어도 종전의 공제 혜택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소규모 양조자들이 주정부에 지불하는 연례 주 주류국 면허비를 면제합니다

매년 1500배럴 이하의 맥주 브랜드를 생산하는 양조자들(생산지와 무관하게)은 이제 매년 브랜드 상표 등록비 150 달러가 면제됩니다. 주 내부 및 외부 양조자에게 제공되는 이 면제는 뉴욕주 양조자들이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며, 소규모 양조자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보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소규모 양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농장 양조 면허를 창설합니다

이 법령은 뉴욕주에서 재배된 제품을 사용하는 소규모 양조자들이 뉴욕주의 농장 포도주 양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장 양조” 면허를 창설함으로써 지역 재배 농장 제품의 수요 증대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및 관광사업 확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신규 면허는 농장 양조업이 다음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뉴욕주 제품을 위한 소매점의 증대:** 이 법령은 농장 양조장이 뉴욕주 상표의 맥주, 포도주 및 주류를 자신의 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제조소는 이제 가게 밖에서 마시는 뉴욕주 상표의 맥주 및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농장 증류주 제조소 또한 이제 가게 밖에서 마시는 뉴욕주 상표의 맥주 및 포도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장 양조장의 식당 개업 허가:** 새로운 법은 농장 양조장이 뉴욕주 상표의 맥주를 자신이 소유한 또는 농장 양조장과 가까운 어떤 식당, 회의 장소, 여관, 민박 장소 또는 호텔에서라도 시음을 하고 접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시음 허가의 증가:** 새로운 법은 농장 양조장, 농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주 제조소가 자신의 업소에서 뉴욕주 상표의 맥주, 포도주 및 주류에 대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관련 제품 판매:** 이 새로운 법은 농장 양조장이 맥주 제조 장비 및 용품, 맥주 시음용 안주, 기념품 그리고 농장 포도주 양조장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유사한 추가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농장 맥주 양조장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맥주가 주로 지역내 재배 농장 제품으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2018년 말까지, 최소한 홉 열매의 20% 및 기타 모든 재료의 20%가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홉 열매의 60% 및 기타 모든 재료의 60% 이상이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홉 열매의 90% 및 기타 모든 재료의 90% 이상이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어야 합니다. 상기 정책 하에서 제조되는 맥주는 “뉴욕주 라벨 맥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법령은 뉴욕주에서 포도주 생산의 성장을 자극한 1976년의 “포도원법(Farm Winery Act)”을 본보기로 한 것이며, 이 법으로 인해 249개의 농장 포도원이 신설되고 포도원의 수가 3배로 증가된 바 있습니다.

### 농장 포도주 양조장, 증류주 제조소 및 맥주 양조장은 부담스러운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농장 포도주 양조장과 증류주 제조소를 비롯해 농장 맥주 양조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세금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이곳 뉴욕주의 모든 맥주, 포도주 및 증류주 도매상은 식당, 바 및 기타 소매점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장 포도주 양조장, 증류주 제조소 및 농장 맥주 양조장들은 규모가 작고 종종 가족 소유업이기 때문에 이 매년 세금 보고 요건에 따른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세금 보고 요건으로 인해 부과되는 부담은 주 세무부의 수익에 비교해 지나치며, 그 이유는 농장 포도주 양조장, 증류주 제조소 및 농장 맥주 양조장의 판매액은 뉴욕주의 맥주 및 포도주 총 판매액 중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체들은 이미 법에 의해 매출액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세무부는 요청만 하면 그것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 Matt Brewing Company에 대한 소개

Matt Brewing Company는 1888년에 독일 태생 이주자 Francis Xavier Matt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가족 소유 맥주 양조장이며, 등록 상표인 Saranac 계열의 맥주는 캐나다, 일본 및 호주로 수출됩니다. 현재 이 양조장은 제3세대와 제4 세대의 Matt 가족들의 리더십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Nick Matt이 회장 겸 CEO의 직무를 그리고 조카 Fred Matt이 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법령의 결과로, Matt Brewing Company는 매년 4십9만3천9백 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이 법령 패키지는 주 전역에 걸쳐 농업 부문과 소기업들에 시사적인 경기 부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인식한 주지사 및 주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업계의 성장을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ee Zeldin 상원 의원은 “뉴욕주의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다른 업계들이 실패하고 일자리를 잃어온 한편 이 업계는 번성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그 점이 이 법안을 처음으로 후원한 상원의원으로서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령이 바로 뉴욕주 경제에 필요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본인의 행정구에 있는 Blue Point Brewery에서 Utica에 있는 Matt’s Brewery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맥주 양조장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의 소규모 양조장 맥주 가격의 경쟁력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A. Griffo 상원 의원은 “이 합의는 뉴욕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대규모 업체인 농업과 가장 신속히 성장하는 업체인 소규모 맥주 양조업을 결합시킵니다. 이 두 업계는 본인의 행정구인 Mohawk Valley 그리고 뉴욕주의 일부 도시 및 농촌 구역에서 가장 안정된 고용주들 중에 속합니다. 상원 여당 그리고 동료 하원의원들과 함께 협조하여 조심스럽게 겨냥한 세금 공제가 일자리들을 보유하고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한 Cuomo 주지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y McDonald 상원 의원은 “이 새로운 법은 뉴욕주의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해줍니다. 세금 및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소기업 소유주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결정이며,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협력한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tty Ritchie 상원 의원은 “이 개혁은 뉴욕주 소규모 맥주 양조업을 우리 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포도주 업계와 동일한 진로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소규모 양조업의 육성은 모두를 위해 유익합니다. 이 법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의 필수적 농업 부문을 지원하며, 소규모 양조장들이 오직 우리 주에만 존재하는 훌륭한 맥주를 생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이 법령 패키지는 주 전역에 걸쳐 농업 부문과 소기업들에 시사적인 경기 부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인식한 주지사 및 주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업계의 성장을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의장은 “우리가 우리 주에서 성장하는 업계를 지원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장래는 더욱 더 밝아집니다. 우리 주의 양조업계를 위한 이 혁신적 지원 정책은 우리 경제에서 이 분야가 좀더 쉽게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농부들, 양조장들 및 주 전역의 맥주 애호가들을 위해 이 법령에 서명한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liam Magee 하원의원은 “뉴욕주의 농업 및 맥주 업계는 이미 중요한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서 매년 우리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규모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하에서, 우리 주의 농부들과

양조장들은 더욱 다양화되어 사업을 확장하고 제품을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hony J. Brindisi 하원의원은 “이러한 맥주 생산 세금 공제 정책은 F.X. Matt Brewing Company와 같은 회사들을 지원해 줍니다. Utica의 역사적 명물로서 백년 이상 유지되어 온 Matt’s와 같은 기업은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Cuomo 주지사와 밀접하게 협조해 우리 주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번성하며, 뉴욕주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R. Lentol 하원의원은 “세금 공제, 브랜드 상표 등록비 면제, 농장 양조장의 지정 등은 뉴욕주에서 성장하는 소규모 맥주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새로운 지원 정책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고용주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킨 Cuomo 주지사를 위해 건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Morelle 하원의원은 “홉 열매 밭에서부터 양조장 시음실에 이르기까지, 이 법령은 뉴욕주 소규모 맥주업체 및 주 전역의 맥주 애호가들 모두를 위해 유익합니다. 주지사의 서명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